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여유자금의 중소기업은행 예치 우선 고려〉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807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V . 입법의 재정영향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장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07. 07.
3. 회 부 일 : 2026. 07. 0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6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 규모는 약 2,400조 원, 연간 운용 규모는 약 890조 원에 이르고 있음. 이 가운데 기금 여유자금은 약 21.8조 원에 달하고 있으나 해당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두거나 수익성 중심의 시중은행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부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방법으로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고금리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정책금융 기능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자원 기반 확충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의 중소기업은행 예치 우선 고려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단서신설)

현행	개정안
○ 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방법 -국·공채 등 유가증권 매입, 금융회사 예치 또는 대여 등 <단서 신설>	○ 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방법 <좌동> - 여유자금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u>중소기업은행 예치를 우선 고려</u>

현행법 제8조는¹⁾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의 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치 또는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²⁾은 여유자금의 예치대상 금융회사의 범위와 예치금리 결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관리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이를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생략)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7조의2(금융회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국고금 및 공자기금 여유자금 위탁운용기관을 선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재정경제부는 2018년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증권금융,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을 국고금·공자기금 여유자금 위탁운용기관으로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21년과 2024년에 각각 3년씩 계약을 연장하였음.

최근 5년간 공자기금 여유자금의 예치 현황을 보면, 여유자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연기금투자폴³⁾과 기타운용사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기업은행에 대한 예치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최근 5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 금융기관별 예치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여유자금 운용(평잔)	합계	117,792	108,884	157,852	126,563	127,336
	연기금투자폴	22,488	20,657	31,515	25,104	26,389
	기타운용사* (위탁운용기관)	95,304	88,227	126,337	101,458	100,947
기업은행 비중(%)		-	-	-	-	-

* '기타운용사'는 재정경제부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공자기금 여유자금 위탁운용기관(한국증권금융,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을 의미함.

개정안은 공자기금 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

3)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위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 현재 연기금투자폴 주간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임.

도록 함으로써 공자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근 고금리 기조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⁴⁾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국가 여유자금의 운용을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생각됨.

다만, 공자기금은 국가의 여유자금을 안정성·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현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재무건전성, 운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용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 예치 고려 원칙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현행 기금 운용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동법 시행령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를 여유자금의 예치 또는 대여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기금의 예치가 가능한 금융기관이라 볼 수 있으므로,⁵⁾ 개정안은

4)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KOSI 중소기업 동향」(2026년 7월호)에 따르면, 2026년 6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38%로, 전월 대비 0.23%p, 전년동월 대비 0.27%p 상승하였음.

5)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법인격)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예치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금융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짐. 따라서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 예치를 개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여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입법방식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영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806)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으로 동 법안의 심사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여유자금 운용기관은 현재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특정 은행에 우선 예치하도록 규정할 경우 다른 은행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함. 또한 공자기금은 재원 조달과 운용 간 시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하며, 자금 운용의 특성상 원금을 보장하면서 필요 시 즉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단기 금융상품 중심의 운용이 불가피하여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개정안의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임.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 ② (생략)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 발생하면 이를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여유자금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⁶⁾

문 의 처
02)6788-5151

6)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 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 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